

아틀리에 933'  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류안내

▣ 구비서류 Check

구분	해당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Check	
필수 서류	무주택서약서	-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	
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- 건본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	<input type="checkbox"/>	
	배점 기준표	-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	
	신분증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	<input type="checkbox"/>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	
	출입국사실증명원	- 발급기간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발급(생년월일~2023.11.24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(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)	<input type="checkbox"/>	
	단신부임 입증서류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있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	
	인감증명서/인감도장	-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/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	
해당자 해당자만 ✓체크	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	- 주민등록상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-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본인, 상세) 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자녀, 상세)	<input type="checkbox"/>	
	피부양 직계존속 (필수)	주민등록 초본	- 주민등록초본(전체) ,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소지등재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
		가족관계 증명서	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,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확인,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피부양 직계비속 (해당자)	출입국 증명서	-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직계존속의 해외체류기준 부합여부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
		주민등록 초본	- 주민등록초본(전체) , 만30세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주소지등재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
		혼인관계 증명서	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, 만18세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출입국 증명서	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	
대리인 신청시 해당자만 ✓체크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		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청약 신청자), ※ 본인 발급용	<input type="checkbox"/>	
	위임장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	
	대리인 신분증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	<input type="checkbox"/>	

※ 위 필수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'23.11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본주택에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  
 ※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.  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정보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